도민이 중심
신뢰받는 의회

제425회 임시회
2025. 4. 22.(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충청북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충청북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발 의 자 : 박지헌 의원 등 8인

2.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

가. 발의일자 : 2025년 4월 11일

나. 회부일자 : 2024년 4월 14일

3. 제안이유

가. 최근 정보통신 및 인공지능(AI) 기술발달에 따른 각종 디지털성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확대하고 전담기구(센터)를 설치하여 충청북도민이 디지털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삶을 영위하게 하고, 피해자에게는 일상회복 등의 지원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나. 현 실태를 반영하여 이 조례의 근거법령이 개정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관련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지원사업을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4. 주요내용

가. 관계 법령에 따라 디지털성범죄에 관한 용어의 뜻을 구체화함(안 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에 예산 및 인력확보를 추가함(안 제3조)

다. 시행계획 수립에 허위영상물 등의 삭제지원 등을 추가하고 계획에 실태조사를 반영하도록 함(안 제4조 및 안 제5조)

라.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사업 확대 및 전문적인 비영리법인 위탁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

마.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

마. 피해 신고 체계 마련 규정을 신설하고 2차 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안 제10조)

5.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음창규)

가.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현행 조례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충청북도민의 인권증진에 기여하고자 2021년 7월 9일 제정되었으며, 이후 근거법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정의를 정비하고,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2023년 10월 6일 조례의 일부를 개정함

○ 최근 정보통신 및 인공지능(AI) 기술발달에 따른 각종 디지털성범죄가 급증하고 있고, 딥페이크 신종 성범죄 등 디지털성범죄의 예방·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마련이 필요했음[5)]

○ 이에 딥페이크 등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확대하고 전담기구 설치, 허위영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일상회복 지원 등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지원 사업을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음

나. 입법형식 및 절차적 타당성

○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디지털성범죄의 피해 확대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한 조치 중 하나로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과 전담기구(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디지털성범죄 관련 사항을 추가 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6)]에 해당하는 사무로서 개정이 가능함

---

5)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는 2024년 12월 12일, '딥페이크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대응책 마련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인공지능을 활용한 합성기술을 성범죄에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해 노력해 왔음

6) 지방자치법 [시행 2024. 5. 17.]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발췌)

○ 이 개정조례안은 본칙 11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행 10개 조례에서 1개 조문을 신설하고, 나머지 조문은 내용추가 및 자구 등을 수정함

○ 그 밖에 입법예고(2025. 4. 14. ~ 21. / 제출된 의견 없음) 및 집행기관과의 협의[양성평등가족정책관 / 수용(일부수정)]를 거쳐 발의한 것으로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음

다. 주요 내용 검토

○ 이 전부개정조례안의 기본 체계는 아래와 같음

현행	전부개정안	비고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자구수정 내용추가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자구수정 내용추가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내용추가
제4조(시행계획)	제4조(시행계획)	내용추가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내용추가
제6조(피해자 지원)	제6조(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전문개정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자구수정
	제8조(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설치 등)	신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자구수정
제9조(2차 피해 방지)	제10조(피해 신고 및 2차 피해 방지)	제목수정 일부신설
제10조(비밀준수의 의무)	제11조(비밀준수의 의무)	자구수정

※ 현행 조례의 ⅔이상의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전부개정의 형식을 취함

---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라.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 **안 제1조**는 목적 조문으로 현행 조례의 자구를 수정하여 조례의 목적을 더욱 구체화하기 위해 ‘디지털성범죄로부터 충청북도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피해자 지원을 통한 인간존엄과 인권증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현행	전부개정안	비고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북도민의 인권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디지털성범죄로부터 충청북도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를 지원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구수정 내용추가

○ **안 제2조**는 근거법령에서 정한 용어의 뜻을 추가 및 보완하여 근거법령과 용어를 통일함

- 제1호나목과 다목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합성영상 등 디지털성범죄의 뜻을 세분화하고 구체화함

현행	전부개정안	비고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에 따른 행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행위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 및 행위를 말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따른 음란행위와 같은 법 제14조부터 제14조의3까지의 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1조의2 및 제15조의2에 따른 행위	내용추가 자구수정

현행	전부개정안	비고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 라. (생 략) 2. (생 략)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인공지능기술을 이용한 성범죄 및 같은 법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를 유통하는 행위 라.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내용추가 자구수정

○ **안 제3조**는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으로

- 제2항을 신설하여 도지사가 디지털성범죄 관련 정책 추진을 위해 예산 및 인력확보에 노력해야 함을 명시하여 재정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함

현행	전부개정안	비고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 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 및 인력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자구수정 신설

○ **안 제4조**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으로 제2항에 디지털성범죄 실태조사 관련 사항(4호)과 디지털성범죄 영상 등의 유통 방지·차단·삭제 등의 대책(5호)를 신설하고, 제3항과 제4항에서 유관기관 등과의 협조와 추진실적의 반영 등을 추가함

- 제2항제4호의 실태조사와 관련된 사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의 합성영상등의 실태 파악 및 국내외 기술 동향 파악 등의 규정을 반영한 것으로 내용이 적절함

- 제2항제5호의 영상 등의 차단 및 삭제 관련 사항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의 규정을 반영한 것으로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차단·삭제 등의 내용이 타당함 (관련 사항은 제6조에서 구체화하고 있음)
- 제3항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해 유관기관 등과 협력하도록 신설한 것으로 이를 통해 시행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고, 제9조에서 구체화하고 있는 각 기관간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규정임
- 제4항은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분석·평가하여 다음해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한 것으로 시행계획의 완결성과 실효성을 위해 적절함

현행	전부개정안	비고
제4조(시행계획) ① (생 략)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1. ~ 3. (생 략) <신 설> 4. (생 략)	제4조(시행계획) ① (현행과 같음)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3. (생 략) 4. 디지털성범죄 관련 실태조사 및 조치 결과 5. 디지털성범죄 영상 등에 관한 유통방지, 차단 및 삭제 등 제반대책 6. (현행 제4호와 같음)	자구수정 신설
<신 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디지털성범죄 관련 유관기관, 관계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 **안 제5조**는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으로

- 제1항 후단에 실태조사의 주요 포함요소를 신설하고, 제2항에서 실태조사 결과를 제4조제2항제4호에 따라 시행계획에 포함하도록 규정한 것은 정합성 측면에서 적절하고 타당함

- 또한, 실태조사의 방법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도록 위임하여 도지사가 책임감을 가지고 실태조사를 추진하도록 융통성을 부여함

현행	전부개정안	비고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성별, 연령을 주요 분석 단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후단신설
<신 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조치결과를 제4조의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신설

○ **안 제6조**는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 조 제목을 피해자 지원에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으로 개정하여 예방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음
- 제1항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사업내용을 구체적이고 포괄적으로 규정함
  * 제1호에는 상담을 긴급성을 고려해 '긴급상담' 등 보호지원을 추가하고,
  * 제4호에서 '피해자 촬영물과 허위영상물, 신상정보'를 포함해 딥페이크 영상물과 피해자의 신상정보까지 보호하도록 하고,
  * 제6호에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홍보 등 인식개선 사업을 신설함
  * 제1항은 전반적으로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에 관해 내실있고 충실한 사업내용을 담은 것으로 적절하며,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충분함
- 제2항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설치에 따라 안 제8조제3항으로 이동함

현행	전부개정안	비고
제6조(피해자 지원) ① 도지사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제6조(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도지사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목수정
1. 디지털성범죄 피해 신고 접수 및 상담	1. 디지털성범죄 피해 신고 접수 및 긴급상담 등 보호지원	자구수정 6호 신설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4. 디지털성범죄 영상 등 삭제지원 및 모니터링	4.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관련 촬영물, 허위영상물 등 및 신상정보의 삭제지원 및 모니터링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홍보 등 인식개선 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7. 그 밖에 도지사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기관 및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안 제8조제3항으로 이동>	

○ **안 제8조**는 이 조례의 근거법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4에 따라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하 “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한 것으로,

- 같은 법에서 규정한 사항 뿐만 아니라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조례로 센터의 기능(실태조사, 각종 사업, 신상정보 및 영상물 등의 삭제지원,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등)과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지원사업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특히, 제3항에서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고, 업무수행을 위한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 제3조제2항에서 도지사 예산 확보 노력 등의 책무를 구체화한 것으로 입법적 타당성이 충분하며, 실효성을 갖추고 있음

○ **안 제9조**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으로 협력 대상에 '정부'와 '관련 기관'을 포함하여 디지털성범죄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영역만이 아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 등이 함께 조치해야 범국가적인 책무라는 것을 명확히 함

현행	전부개정안	비고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시·군,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경찰청, 의료기관 및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정부,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경찰청, 다른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및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지원 관련 기관·시설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일부수정

○ **안 제10조**는 디지털성범죄 피해 신고 등에 관한 사항으로 조 제목을 '2차 피해 방지'에서 '피해 신고 및 2차 피해 방지'로 개정함

- 제1항에 디지털성범죄물로부터 충북도민을 보호하기 위해 범죄물의 제작 또는 유포 등으로 디지털성범죄 피해를 당한 경우 또는 범죄물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신고체계를 마련함

현행	전부개정안	비고
<신 설>	제10조(피해 신고 및 2차 피해 방지) ① 도지사는 도민이 디지털성범죄물의 제작 또는 유포 등 디지털성범죄 피해를 당한 경우 또는 디지털성범죄물을 발견한 경우에 이를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현행 제9조와 같음)	신설

○ 그 밖에 **부칙**에서 시행일을 2025년 6월 4일로 규정한 것은 근거법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근거 조문 및 조항의 시행일(2025. 6. 4.)을 따른 것으로 적절하고 바람직함

라. 그 밖에 검토 사항

○ 충청북도의회 의사입법담당관은 이 조례에 관해 ‘디지털성범죄 대응 체계를 단편적 피해 지원에서 벗어나 예방·대응·지원·복원 전 과정을 포괄하는 종합적 대응 조례로 전환하려는 의도를 충실히 담고 있으며, 내용적으로도 상위 법령과의 정합성 및 체계성 측면에서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제출함(의사입법담당관-781)

마. 종합 검토의견

○ (필요성) 이 조례안은 근거 법령의 개정사항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조례에 담아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출범과 피해 정보 삭제 등 피해자의 신속한 일상회복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은 충분함

○ (타당성) 또한 전부개정을 통해 디지털성범죄의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정책을 더욱 안정적이고 실효성 있게 추진하려는 것으로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타당함

○ (법적합성 및 시의성) 상위 법령 위배 또는 부패영향평가 등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집행기관과 사전 협의를 통한 사업내용 조정, 자구 수정 등 집행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였고 조문의 체계와 구성 등 법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으며, 딥페이크 성범죄가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현 시점에서 시의적절한 개정이라고 판단됨